



‘언론’과 ‘언론 아닌 것’ 사이

— ‘언론’에 대한 새로운 법적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살다보면 황당한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안과병원이면 눈이 아프기만 하면 알아서 다 치료해 주겠거니 하고 찾아갔더니 그런 병은 우리 병원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며 더 큰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다. 가입할 때는 온갖 사고를 다 책임져줄 것처럼 말하다 막상 사고가 나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이러저러한 약관을 들이대며 해당사고는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때도 그렇다.

‘의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정치판이 아니더라도 ‘기대에 대한 배반은 분노를 낳는다. 특히 그 당사자가 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거절의 이유가 아무리 합당해 보이나 하더라도 노여움은 쉽게 풀리지 않는 법이다.

다소 무리한 비유일 수 있지만 비슷한 상황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일어난다. 아니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에는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이지만 하면 뭐든지 다 구제해 줄 것으로 알고 찾아갔더니 거시기는 ‘언론’이 맞는데 거시기는 ‘언론’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럴라치면 민원인은 “헐! 도대체 뭐가 언론이고 뭐는 언론이 아니란 말이지? 뭐 기준으로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하는 거요?”하고 불만을 터뜨릴 것이다. 상담직원은 언론중재법을 비롯하여 동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들을 들이대며 더 큰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민원인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민원인 : “뭐 그딴 건 난 모르겠고! 이거 빨리 접수나 해주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실리면 되고 저기 올라있는 건 안 된다니 뭐 그딴 법이 다 있단 말이지!”

상황이 이쯤 진행되면 상담직원이 할 말이 별로 없다. “법이 그래서 그래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이긴 하지만 상담직원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 ‘언론’은 신문법상의 신문, 인터넷신문, 포털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 그리고 방송법상의 방송, 그 밖에 잡지와 뉴스통신, IPTV를 말한다. 그 밖의 매체는 속된 말로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올라와있는 내용은 적어도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은 아니다. ‘언론’의 지위를 얻지 못한 이런 유사언론 표현들은 ‘정보’로 분류된다. 표현행위라는 동복(同腹)에서 나왔지만 입양된 매체에 따라 언론중재위의 관할을 받지 못할 운명을 타고난 것들이다. 죄송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다른 병원으로 가보셔야 한다.

그런데 민원인의 지적도 맞는 말이다. ‘뭐 그딴 법이 다 있단 말인가.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날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언론인지 아닌지 내가 어찌 안단 말인가. 하는 짓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르다면 덩치가 좀 작다

거나 유독 쫓아다니는 광팬들이 따로 좀 있다거나 ...’

사실 언론중재법이 제·개정될 당시만 해도 이런 종류의 매체들은 별로 없기도 했지만 설사 있다 해도 공론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편이었다. 그렇기에 굳이 이들까지 규율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언론중재법 시행령이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킨 것도 2009년 법령개정 당시의 미디어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생태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통저널리즘에서는 직업적인 기자의 ‘뉴스가치’ 판단에 대한 소속 뉴스조직의 게이트키퍼 여부가 ‘언론’과 ‘언론 아닌 것’ 간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 블로그나 기자 개인블로그, 뉴스 펀딩 등에서 보았듯이 뉴스조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한 뉴스의 영향력이나 권위는 때때로 기성언론을 능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타 언론의 뉴스를 자기 플랫폼 이용자들의 선호에 맞추어 선별, 부분가공·편집하여 제공하는 ‘뉴스크레이션서비스’와 같은 신생뉴스 스타트업들도 쏟아지고 있다. 1인 미디어형태의 인터넷방송이나 시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팟캐스트’는 또 어떠한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현행 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체개념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뉴스플랫폼들의 출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매체였던 SNS가 유력한 뉴스유통창구로 등장해 최근에는 모바일포털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통하여 뉴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한, 오보로 인한 피해나 인격권 침해도 당달아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체환경에서는 민원인 이전에 위원회 상담직원도 민원인이 문제 삼는 매체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 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중재제도가 디지털 생태계 내 뉴스플랫폼의 현란한 진화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법이나 제도가 현실을 모두 예측하고 앞질러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디지털의 속성에서 비롯하는 다양한 ‘신생’ 내지 ‘변종’ 뉴스플랫폼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언론중재제도의 미래에 던져진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에 대한 법적 개념 재정립을 위해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때이다.